



2016년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2016. 5. 2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

2016년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의안번호	2016-1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10:00 ~ 11:00 ○ 장 소 : 구청 별관 4층 작은도서관 내 회의실										
참석위원	○ 위 원 장 : 민원여권과장 ○ 내부위원 : 자치행정팀장 ○ 외부위원 : 임진희, 박종연										
회의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소개 3.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방법 설명 및 심의 4. 폐회선언										
상정안건	2015. 12. 31. 기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6,538권의 폐기여부 심의 (폐기, 보류, 보존기간재책정)										
심의결과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의 대상</th> <th>폐 기</th> <th>보존기간 재책정</th> <th>보류</th> </tr> </thead> <tbody> <tr> <td>6,538권</td> <td>6,004권</td> <td>513권</td> <td>21권</td> </tr> </tbody> </table>			심의 대상	폐 기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6,538권	6,004권	513권	21권
심의 대상	폐 기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6,538권	6,004권	513권	21권								

〈발언요지〉

□ 간사

지금부터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폐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본 심의 진행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오늘 심의할 기록물폐기대상은 6,539권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기록물평가심의회 및 심의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폐기기록물 6,539권을 일일이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생산부서의 의견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의견이 합치되는 기록물은 생산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 생산부서의 의견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토대로 폐기 및 보존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위원장이신 엄영희 민원여권과장님 주재로 심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이번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의 보존가치 등을 평가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비전자기록물의 폐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 우리구 기록물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땅땅땅 -)
- 질문에 앞서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폐기대상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처리절차를 우선 말씀드리자면, 처리과에서 폐기대상 기록물 목록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기능평가를 진행함. 보통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심사를 마치면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폐기대상 기록물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대체적으로 기능평가 수행하게 되고 기능평가로 인한 미진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처리과에 재검토 요청을 하였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내용에 동의를 하면 동의로 체크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의견과 다를 경우 비동의로 체크하고 기록물철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음.
- 심의자료를 보시면 폐기대상 기록물 6,539권 중 512권을 보존기간 재책정 하였음.

예를 들어 민원서류, 국유재산관련기록물, 시민의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인허가 기록물들 등을 보존기간 재책정 하였으며, 처리과 재검토 의견조회시에 대부분 처리과에서 동의를 함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내용에 비동意的한 기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연번 1853번 "민원관계철"은 시장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의 단순 건의사항을 처리 한 것으로 이미 처리가 완료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줌
- 다음 보류를 보시면 박종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대상선정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기록물을 대상선정을 하고 보류로 심사의견을 기재한 것은 제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음. 보존기간 30년 기록물이기 때문에 기록관에서 심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처리과에서 폐기 의견을 주고 저도 폐기하는 것으로 심사의견을 기재하였는데 처리과 재검토 의견조회시 폐기보류 의견을 보낸 기록물들이 있음. 첫째는 간판개선 관련 기록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보조금 정산 관련 감사대비를 위해 폐기보류를 요청하였음. 둘째는 정신보건센터 위탁철, 정신보건응급입원 관계철로 의약과에서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업무적으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폐기보류를 요청하였음

□ 위원장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심의자료를 보시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프로세스를 처리과 의견조회 한 이후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를 하고 보존기간 변경이 있기 때문에 다시 처리과 재검토 의견조회를 하는 것은 창의적으로 잘 한 것 같음. 보존기간 책정하는 사람들은 업무담당자들이니까 해당 처리과에서 보존기간 변경 되어야 한다는 기록관의 심사의견이 있을 때 그분들도 생각해보고 동의하고 그리고 이후에 기록물철의 보존기간을 적정하게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듦.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음.
- 연구사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보존기간 30년 기록물은 기록관에서 폐기하는 권한은 현재로는 없고, 기록물관리법령이 개정중이어서 이슈대상이기는 한데, 현재로는 개정전이기 때문에 현재 폐기 권한이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음
- 기록물 철 제목만 보고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5.18 민주화 기록물은 어떠한 기록물임?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박종연 위원님이 심의회 개최 전 의견을 주신 것이 민주화 관련 기록물들은 내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주셨음. 그래서 기록물 철 실물을 준비하였음

□ ○○○ 위원

- 철명이 동일한 남산봉화식 기록물철이 2개가 있음. 같은 해에 만들어진 기록물이 2권이 있는 것인지?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남산봉화식과 관련해서 내용은 다르지만 기록물철의 제목을 동일하게 부여한 것으로 판단됨

□ ○○○ 위원

- 남산 봉화식과 관련하여 어떤 기록물이 철 되어 있는지에 대한 철명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부여되어야 함. 본인들이 편철할 때 적절한 기록물철에 편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평가·폐기를 하거나 나중에 검색을 하고 확인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시민과 관련된 여러 철들을 많이 준영구로 책정하셨는데 요즘 추세가 그렇긴 함.
- 중구청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군들 총무로 영화제, 출판, 공연, 게임, 영화, 음반 관련 기록물들은 중구청만의 특색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등록, 변경, 신고 관련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을 재책정 한 것은 잘 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존기간 5년으로 책정된 표창관계철 같은 경우 기록물철의 내용을 봐야 하긴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 조금 길게 책정을 하면 가족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적을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다른 구에 갔을 때 여쭙보니 표창 내역 자체는 30년 이상으로 보존되는 철이 있고 표창을 하는데 필요한 기록물을 철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록물은 5년이면 적정한 것 같음.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 할 것 같음.

□ 위원장

- 청장님께서도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폐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

○○○ 위원

- 중구의 특색 인 것 같은데 출판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는 신고관련 기록물이 워낙 많아서 서고에 감당이 안 된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임?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저도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있어 부담이 있는 것이 저희가 서고가 포화상태라 해당 기록물이 처리과 서고에서 관리되고 있음.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관련 기록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우리구 기록물 분류기준표에 5년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기록관리기준표 표준에 보면 출판과 인쇄에 관련된 기록물은 증빙적인 가치때문에 준영구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을 준용해서 판단한 부분이 있음.

○○○ 위원

- 공매차량등 비과세철을 준영구 이상으로 관리해야하는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저번 심의회때 세무과 기록물은 보류를 굉장히 많이 했음. 이번에 세무과 직원분 하고 인터뷰를 진행해서 지방세 부과 관련 제척기간이 5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10년까지 해당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기록물은 보존기간 10년. 또한 압류와 관련된 기록물은 준영구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음. 공매차량 역시 압류와 관련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준영구로 판단하였음

○○○ 위원

- 이전에 말씀드렸던 5. 18. 관련 기록물은 보셨는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5. 18 민주화 관련 기록물의 업무를 확인했음. 해당 기록물은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사업무를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접수한 후 어느 정도 조사를 해당 기록물 원본을 위원회쪽으로 보낸 기

록물이며, 우리구에 남아있는 기록물은 사본과 회계서류임을 확인함

○○○ **위원**

- 기록물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지출결의서임.

○○○ **위원**

- 공무원이 조사한 내역이 있음. 이러한 내용은 역사연구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임

○○○ **위원**

- 중간에 기록물철 중에 공무원이 직접 손으로 기재한 기록물도 있음.

위원장

- 관련 기록물 중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하겠음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관련 기록물 중 사본과 회계서류들로 이루어진 기록물은 폐기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된 기록물인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기록물 1권과 민주화운동 기록물 1권은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재책정 하도록 하겠음.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대상 6,538권 중 폐기 6,004권, 보존기간 재책정 513권, 보류 21권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땅땅땅 -)

이상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폐기의 적정성을 위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마치고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